

안양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정 2022. 12. 30. 조례 제3460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
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
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이동노동자”란 대리운전기사, 퀵서비스·택배기사,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
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, 주된 업무가 이동
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.
2. “이동노동자 쉼터”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
공간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이동노동자 쉼터(이하
“쉼터”라 한다)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·
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쉼터의 설치)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쉼터
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
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.

제5조(쉼터의 기능)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
2.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·복지서비스 제공
3.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담, 문화,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
4.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

제6조(관리 및 운영) ① 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·운영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
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 관련 전문기관, 비영리 법인·단체에 쉼터의 운영을
위탁할 수 있다.

안양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③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·방법 등은 「안양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